

투자설명서 등 변경안내

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및 집합투자규약 일부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- **효력발생일:** 2021년 10월 21일(목)
- **대상 펀드:** AB 슷 듀레이션 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- **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**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문서전반	펀드명칭 변경	AB 퀄리티 고수익 증권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	AB 슷 듀레이션 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문서전반	블룸버그 채권지수 브랜드 변경에 따른 비교지수 명칭 변경	Bloomberg Barclays Global High Yield Corporate 1-5 year BB/B Index (원화헤지 100%)	Bloomberg Global High Yield Corporate 1-5 year BB/B Index (원화헤지 100%)
투자결정시 유의사항	숫듀레이션 의미 기재		12. 슷 듀레이션 (short duration) 채무증권은 듀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짧은 채무증권을 의미하며,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예상평균 듀레이션이 4 년 이하인 포트폴리오로 구성됩니다.
요약정보			
투자비용	연금 클래스 추가에 따른 내용 업데이트		- 종류 S-P, 종류 C-P, 종류 Ce-P, 종류 C-P2, 종류 Ce-P2 관련 보수 및 비용관련 내용 기재
집합투자기구의 종류	연금 클래스 추가에 따른 내용 업데이트		- 개인연금(P):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- 퇴직연금(P2)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
제 1 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연금 클래스 추가에 따른 내용 업데이트		- 종류 S-P: DO320 - 종류 C-P: DO321 - 종류 Ce-P: DO322 - 종류 C-P2: DO323 - 종류 Ce-P2: DO324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
<p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, 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</p>	<p>연금 클래스 추가에 따른 내용 업데이트</p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(S-P) -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(C-P) -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(Ce-P) -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-P2) -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e-P2)
<p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, 나. 종류형 구조</p>	<p>연금 클래스 추가에 따른 내용 업데이트</p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인연금(P):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- 퇴직연금(P2)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
<p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, 가. 일반위험 - 채무증권 위험</p>	<p>하이일드 채권의 정의 기재</p>		<p>투자적격등급 미만인 하이일드(High Yield) 채권이라 함은 Standard and Poor's 의 BB+ 이하, Moody's 의 Ba1 이하 및/또는 Fitch 의 BB+ 이하 또는 NRSRO(국가공인 통계등급평가기관)의 등급 중 이에 상응하는 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등급의 채권을 말하며, 국내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등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</p>
<p>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, (3) 종류별 가입자격</p>	<p>연금 클래스 추가에 따른 가입자격 내용 업데이트</p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(S-P)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-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(C-P):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-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(Ce-P):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로서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투자자 -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-P2)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-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e-P2)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로서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투자자

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</p>	<p>연금 클래스 추가에 따른 수수료 내용 업데이트</p>		<p>[종류 S-P, 종류 C-P, 종류 Ce-P, 종류 C-P2, 종류 Ce-P2] - 선취판매수수료: 없음 - 후취판매수수료: 없음 - 환매수수료: 없음</p>
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	<p>연금 클래스 추가에 따른 보수 및 비용 표 업데이트</p>		<p>[종류 S-P] - 운용보수: 0.15% - 판매보수: 0.18% - 신탁 및 사무관리보수: 0.065% - 총보수: 0.395% - 합성총보수비용: 0.997% [종류 C-P] - 운용보수: 0.15% - 판매보수: 0.60% - 신탁 및 사무관리보수: 0.065% - 총보수: 0.815% - 합성총보수비용: 1.417% [종류 Ce-P] - 운용보수: 0.15% - 판매보수: 0.30% - 신탁 및 사무관리보수: 0.065% - 총보수: 0.515% - 합성총보수비용: 1.117% [종류 C-P2] - 운용보수: 0.15% - 판매보수: 0.50% - 신탁 및 사무관리보수: 0.065% - 총보수: 0.715% - 합성총보수비용: 1.317% [종류 Ce-P2] - 운용보수: 0.15% - 판매보수: 0.25% - 신탁 및 사무관리보수: 0.065% - 총보수: 0.465% - 합성총보수비용: 1.067%</p>
<p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,</p>	<p>연금 클래스 추가에 따른 과세 내용 업데이트</p>		<p>(4)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(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하여, 이하 '연금계좌'라 한다)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 등으로</p>

			과세합니다. 관련 사항은 판매회사의 “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” 또는 관련 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※[연금계좌 과세 주요 사항] 표 업데이트
	과세 관련 유의사항 추가	관련 문구	※ 동 투자신탁은 해외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로서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분리과세 및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적용되는 하이일드 펀드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문서전반	펀드명칭 변경	<u>AB 퀄리티 고수익 증권투자신탁 (채권- 재간접형)</u>	<u>AB 슷 듀레이션 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</u>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제3항	연금클래스 추가	(추가)	8. 종류 C-P 수익증권 9. 종류 Ce-P 수익증권 10. 종류 C-P2 수익증권 11. 종류 Ce-P2 수익증권 12. 종류 S-P 수익증권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 제1항	연금클래스 추가	(추가)	8. 종류 C-P 수익증권 9. 종류 Ce-P 수익증권 10. 종류 C-P2 수익증권 11. 종류 Ce-P2 수익증권 12. 종류 S-P 수익증권
제23조(판매가격) 제1항	연금클래스 추가	(추가)	8. 종류 C-P 수익증권: 소득세법제 20 조의 3 및소득세법시행령제 40 조의 2 에따른연 금지축계좌의가입자 9. 종류 Ce-P 수익증권: 소득세법제 20 조 의 3 및소득세법시행령제 40 조의 2 에따른 연금저축계좌의가입자로서온라인을통해가 입하는투자자 10. 종류 C-P2 수익증권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의한퇴직연금및개인퇴직계좌(IRP) 가입자 11. 종류 Ce-P2 수익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의한퇴직연금및개 인퇴직계좌(IRP)

			<p>가입자로서온라인을통해가입하는투자자</p> <p>12. 종류 S-P 수익증권: 집합투자증권에한정하여투자중개업인가를 받은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)가개설한온라인판매시스템에회원으로가입한투자자전용이며, 소득세법제 20 조의 3 및소득세법시행령제 40 조의 2 에따른연금저축계좌를통하여가입한투자자</p>
제37조(보수) 제3항	연금클래스 추가	(추가)	<p>(종류 C-P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15%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60%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4%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25% <p>(종류 Ce-P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15%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30%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4%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25% <p>(종류 C-P2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15%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50%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4%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25% <p>(종류 Ce-P2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15%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25%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4%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25% <p>(종류 S-P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15%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18%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4%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25%
제42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추가)	<p>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사유로 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해당 변경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p>

			<p>1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 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</p> <p>2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써 투자신탁 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</p>
제50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		<p>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<u>수익증권저축약관</u>"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</p>	<p>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<u>수익증권저축약관</u>" 또는 "<u>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</u>"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</p>

□ 기 타: 상기 변경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변경된 최종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